



## 회계계약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 1. 공사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Ⅱ 질 의 Ⅱ

- 질의 1) 입찰공고 상 명시되어 있는 10톤/일 이상 소각시설 준공실적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입찰참가 대표사가 그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도급을 통하여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그 실적을 충족한다면 그 입찰참가 자격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 질의 2)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라항 ‘본사의 소재지가 ○○지역 이외의 업체는 ○○지역의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업체와 전체금액의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이 가능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찰참여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치 아니하고 분담이행방식(대표사-건축공사 100%/구성사-산업환경설비공사 100% 분담이행)의 협정만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그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 질의 3) 입찰공고 상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분

답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면허보완이 아닌 공사 시공실적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질의1,3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77호)』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Ⅲ. 제한기준 및 방법 → 2. 제한요령 → 5)에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공고상에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찰참가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77호)』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77호)』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Ⅱ-3-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에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을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두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발주처는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적합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전(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이전)에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지방계약법 운영관련 질의

### Ⅰ 질 의 Ⅰ

- 자치단체에서 체결한 “통근버스 등 임차계약”에 있어 원자재의 가격급등(유류)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버스임차운행이 곤란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한 계약체결후 90일 이내 원자재(유류)의 가격급등으로 물가상승(100분의3이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상태로, 해당 요건이 동항에 명시한 계약이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임차계약에 있어 원자재(유류)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제73조제5항 동 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 구체적으로 조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기준일, 입찰금액, 원자재 가격 상승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3. 입찰공고문에 의한 실적평가기준 관련 질의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입찰공고문을 변경하여 실적인정범위와 평가기준규모를 명시한 경우, 시공실적 평가시 평가기준규모 이상의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Ⅲ-2-가-4)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 1〉주1)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라면 평가기준 규모 대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특정규격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질의

### ■ 질 의 ■

-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지장물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고재(고철)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内の 철근으로서 해체 공사시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하여야 하나, 고재환수에 대하여 별도로 매각할 경우 현장 여건상 콘크리트와 철근분리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내역서상 공사중에 발생하는 고재(고철)에 대하여 수급자가 처리(매각)키로 하여 재료비 항목상(-)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후 총 공사비에서 발생고재(고철)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발생한 고재 환수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요령에 의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요령에 의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철거공사 등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고철 등의 작업설·부산물은 “PS 항목”(Provision Sum : 잠정금액)으로 계약체결 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전에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정산(물량 등)하여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라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舊)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운영요령(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의 판단 기준은
- 질의 2) 낙찰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을 변경하여 타시도의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3) 낙찰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주된 영업소가 변경되어 계약체결을 못하였다면 후 순위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1·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舊)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지역으로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입찰에 참여한 당해 지역이 주된 영업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타시·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3에 대하여** 구(舊)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 제8조제3항에 “선순위 낙찰자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여부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1차 입찰을 집행한 결과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차로 재입찰공고 결과 또다시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을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로서 입찰자가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용역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한도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Ⅲ-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한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 이며
- 재공고 입찰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수의계약운영요령 Ⅲ-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재공고입찰에서 정한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7.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관련 질의

### ■ 질 의 ■

- △△고등학교가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추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기숙사 증축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두개의 공사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Ⅲ-1-나-1)에서는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며,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의 강당증축공사와 기숙사공사가 동일구조물공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2008년도 예산상 각 별개의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각 공사별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8.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2008년 2월에 00기관이 발주한 00건축공사를 시공과 관련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를 맞출 수 없으므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전시공 토록하고 이에 따른 기성금을 개산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 개산금으로 지급한 기성분 자재까지 소급적용하여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한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VI-6- 라항목 및 마 항목에 의하여 소요자재의 수급변경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 예규 VI-1- 다 항목에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 9.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질의

- “△△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국도 구간내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동일 구간에 민간기업체인 (주)△△△에서 LNG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을 추진할 계획인 바, 민간기업체인 (주)△△△가 관련 상하수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다면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를 동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Ⅲ-4-가에 따라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고, 금차 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일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10. 대표자 성명의 변경등록 관련 입찰 무효 여부 질의

### ■ 질 의 ■

- 법인의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있어서 복수인대표자 전원의 성명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그 입찰은 무효인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동 조항 나목에 의하여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변경등록하게 되어 있는 바,
- 이는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경우인지(각자대표) 또는 수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인지(공동대표)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한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11. 입찰참가자격 및 동일실적 인정여부 관련 질의

### ■ 질 의 ■

-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보도육교(아치교, 현수교, 사장교만 인정) 단일공사 이행실적 경간 46m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기하고 “제한실적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후 투찰하여야 하며, 상기 자격확인시 부적격업체 및 마감시간 이후 실적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 부적격업체로 판정한다”고 공고한 경우,

-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문에 실적제한부분을 사전에 서류로 접수받아 입찰참가를 허용한 것이 적격심사에서 실적평가지 그 실적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36호)〈별표1〉 I- 1 내지 4 에 따라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의 규모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범위에 의하며,
- 이 경우 실적인정규모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규모의 70% 까지 하향 조정하여 인정규모를 별도로 입찰공고에 정할 수 있으며, 실적인정범위는 현재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과거실적으로서 입찰공고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자가 확인하여 동일 실적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구)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안부 예규39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격심사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VI-3은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재공고입찰의 여부는 입찰공고문의 조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최종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질의

#### ■ 질 의 ■

- 「(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2008.7.7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로 제정되기 이전 예규임)」 상 현장에 투입된 상용근로자의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신설(2007.9.20)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공사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입찰에 관한 서류는 그 공사의 입찰공고 시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집행기준의 2007.9.20자 개정시 신설된 제42조제3항제2호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산제도는 그 시행일(2007.9.20)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의 계약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상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경우만 인정)토록 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14. 공사이행 연대보증 관련 질의

#### ■ 질 의 ■

- 당초 계약상대자(이하 원도급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공사이행 연대보증업체가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거 본 공사를 이행하고

있던 중에, 당해공사의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발주청에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토록 하였음

- 이 경우, 연대보증업체는 본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급할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Ⅰ

-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은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요청한 경우의 처리문제는 발주청에서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1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법인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Ⅰ 질 의 Ⅰ

- 통일을 대비한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제25조제8호 다목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시행령 제25조제8호 다목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에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사업(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25조제8호 다목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I. 수의계약 관련 질의모음(III)

### 1. 전염병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1항 : 천재, 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행사, 원자재의 가격 등 그 밖의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여기서 천재는 자연 및 생물 등으로 인한 재해로 포괄적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밖의 준하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우리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하여 혈청검사 및 그 밖의 방역, 검사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사항에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천재지변은 지진·홍수·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며, 병충해·전염병 등이 급속히 확산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2. 변경공고 가능여부 질의

#### ■ 질 의 ■

- g2b에서 변경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서상의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공고서를 수정하여 변경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과 그에 따른 수의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
-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 및 재공고 등을 하면서 공고내용의 착오사항을 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변경공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3. 1순위자 연락두절시 낙찰자 선정방법 질의

## Ⅰ 질 의 Ⅰ

- 소액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1순위자를 선정하였으나 개찰결과보고서에 등재된 연락처와의 통화가 불가하고 낙찰자 결정사항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였으나 낙찰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능한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견적서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1순위업체를 결격업체로 제재하고 새로운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물품의 낙찰하한율 적용관련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소액 수의계약 요령은 가격 2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은 87.745%의 낙찰하한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00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예규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는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며,
- 추정가격 1.9억원미만 물품을 경쟁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방법 결정을 물품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낙찰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경쟁입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하한금액에 제한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5. 추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가능 및 적법여부 질의

### ■ 질 의 ■

- △△시로부터 설계에 대해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고 체육관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한내에 납품받고 검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에 △△시로부터 추가로 협의 및 요구사항이 있어 부득이 설계를 추가 또는 변경하게 되었는데 기발주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후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실비를 산정하여 기존 설계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적법한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장래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신기술·특허·저작권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설계를 변경하거나 당초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당초 설계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추가 또는 변경설계사항은 경쟁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당초 설계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하자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6. 학술용역 수의계약시 특정인의 범위 질의

### Ⅰ 질 의 Ⅰ

- 계약심의를 거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은 1인견적으로 계약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위해 계약심의회위원회 개최시 계약심의를 하기위한 “특정인”이라함은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된 2개이상의 법인을 상정하여 비교 심의후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인지 여부
- 아니며 계약을 희망하는 1인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계약심의회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그 업체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특정인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기술·용역을 말하는 바
- 이 경우 특정인은 특정한 학술연구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경제학분야의 권위자, 생태학분야의 전문가 등등을 예로 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정인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7. 직접 생산하는 물품 확인에 대한 질의

### ■ 질 의 ■

- 지방계약법제25조제6호 마목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이들 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눈으로만 확인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여부
- 아니면 서류상으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여부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직접생산 증명서)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해당업체 또는 계약대상자를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구매하여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생산·납품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기관의 농공단지 입주증명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명서와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동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서류 이외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8.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각서징구 관련 질의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상대자 결정시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징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각서징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체결을 하도록 한 바,
-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의계약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각서를 징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이후 결격사유가 판명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각서를 근거로 계약해제(해지), 결격업체 제재를 하여 지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한 질의

###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2항에서 “본문”이란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만 포함이 되는지, 1항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라 함은 제1항 본문의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다만,~’ 이하의 규정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0. 용역 자격 중복제한 여부 질의

### ■ 질 의 ■

- 입찰공고내용 “행정서비스현장 모니터링 용역”(기초금액:3천만원)과 관련하여 견적입찰 참가자격이 [도내업체와 최근3년 이내 고객만족도 조사실적(누계실적3천만원)이 있는 업체로]로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 5항에 의한 자격 중복제한 불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소액수의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IV-1-(2)-가-④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이외에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험(실적),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1.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 ■ 질 의 ■

-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제1항 제4호 차목 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대규모)청사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기존 수년간 시설관리 한 노하우를 인정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를 적용 수의계약에 의 할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차목의 규정은 특정인의 기술 · 용역으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특정인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방법 결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 계약심의위원회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방법·입찰참가자격·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바, 품의서를 받아 가능한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입찰 및 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2. 소액수의견적 공고시 지역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 질 의 ■

- 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시 시·도로 지역제한하여 유찰될 경우 인접한 다른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처음부터 지역을 확대하여 인접 시·도를 포함하거나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경쟁으로 공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
-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에 대한 부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관할 시·도로만 지역제한 할 시 유찰될 우려가 있을 거 같은데 처음부터 지역을 확대하여 공고를 해도 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계약에 있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는 경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인접시·군을 포함하거나 시·도로 견적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지역제한의 범위는 계약담당자가 업종 및 업체수와 접근성·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시·군으로 제한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인접시·군, 또는 시·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재공고를 함으로써 계약업무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참가대상자가 적은 업종은 처음부터 시·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13. 수의계약 가능금액 질의

#### ■ 질 의 ■

- 지방계약법 제25조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금액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 2,000만원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가격인지 여부
- 또한 2,000만원 미만 경미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이 업체가 건설업인 사업자나 법인이면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여기서 추정가격은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설계서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은 추정금액이고 추정가격에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예정금액이고,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합한 금액은 예정가격이 됩니다.
- 아울러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미만, 특수공사를 제외한 전문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미만이 해당됩니다.

### 14. 소액수의계약 수기 견적서 제출 관련 질의

#### ■ 질 의 ■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수기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어, 수기 견적서를 제출 받을 때
- 안내공고 없이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견적서를 받은 것 인지,
- 발주부서에서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수의계약 의뢰하며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것 인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시·도 이상으로 견적을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수기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발주부서에서 견적대상자를 추천할 수는 있겠으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은 계약담당자의 업무에 속합니다.

## 15. 소액 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 판단 관련 질의

###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 2008.6.18. 개찰결과 낙찰된 업체가 2008.6.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4월(2008.6.19~2008.10.18)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판정됨에 따라 위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영업정지등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일 현재 영업정지등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견적서 제출일(투찰일)을 경과하여 영업정지등이 확정된 경우는 수의계약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계약체결 전에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건설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 입찰, 견적제출 등 영업행위도 정지되는 바,
- 제재기간 중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동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